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3일, 이상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1.27.)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2.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상식 의원)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자를 받은 법인의 경영상 변화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미흡한 사후관리로 지방공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지방공사의 재정 악화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자 법인의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가 필요함.

이에 지방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

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신설).

국가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1]에 따라 주무기관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음.

또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음.

이러한 출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을 다른 법인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이나, 출자기관의 경영부실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함.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 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에 따라 매년 출자기관의 경영성과를 주무기관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조(출자기관 등의 운영) ⑦공기업·준정부기관은 출자기관의 관리현황과 경영성과 등을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년 4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출자기관의 경영성과가 부실한 경우 개선·폐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후관리 제도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개정안은 지방공사 출자기관에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가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출자기관을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으로 보임.

다만, 전술하였듯이 국가 공공기관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보다 공식적인 사후관리 제도로서 매년 출자기관 경영성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부도 동일한 제도를 지방공사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3)]

지방공사 출자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영성과 보고 제도를 지방공사에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3) 제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의안번호 212607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이 행정안전부와 협의 하에 발의된 바 있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